

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



7월 1일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
주민세 사업소분을 **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**
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

납부서와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
기한 내에 납부서로 납부 하시고,
납부서상 연면적 세액 등이 **현황과 다를** 경우에는
인터넷 이택스(etax.seoul.go.kr)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주민세 사업소분

- **납세의무자**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*와 법인사업자
*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,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
- **과 세 표 준** 사업소 및 그 연면적
- **세 액** 기본세액[5~20만원]+연면적 세율[250원/㎡(330㎡초과시)]

신고 납부기간

2023년 8월 1일 ~ 8월 31일

신고 납부방법

-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(이택스, 위택스)
- ② 우편,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

※납세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우편발송되며,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(단,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)

주민세 문의

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국번없이 120번

